

의안번호	제 360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6월 22일 (제 311 회)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제 안 자	정책복지위원장
제안연월일	2012년 6월 20일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의안 번호	360
----------	-----

제안 연월일 : 2012. 06. 20.
제 안 자 : 정책복지위원회

□ 주 문

-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가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추가 지방재정 분담금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육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의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 헌법 제31조제3항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적 이념 및 가치를 확인하고 실현하며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충청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5개 도는 전면 무상급식을, 11개 시·도는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어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법률을 개정해 무상급식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토록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추진한 0~2세 무상보육이 예산 미확보로 시행한지 6개월도 안 돼 중단위기에 놓여있음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추가 지방재정 분담금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금년 하반기부터 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예견되고 있음
- 무상보육은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만 2세미만의 영아의 경우 가정보육이 바람직한데도 정부가 돈을 지원하면서 시설보육을 하도록 유도 함에 따라, 전업주부조차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2011년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로 5개도는 전액 지방비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11개 시·도는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헌법 정신에 따라 전액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요인이 되고 있는 상태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서 무상의 범위에 급식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금년 하반기부터 예상되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과
-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헌법정신에 맞게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전액 국비지원토록 건의하고자 함

□ 건의안 이송처

-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첨부

-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국회는 금년 3월부터 0~2세 영아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정부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증액했으며 사업비의 40~50% 가량을 지자체에 분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추가 지방재정 분담금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 지자체가 금년 하반기부터 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안돼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국회와 정부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증액시킴으로써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와 의회에서는 정부 및 국회에 재원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의 시급한 과제인 출산율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만 2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보육이 바람직한 데도 정부가 돈을 지원하면서 시설보육을 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전업주부조차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7만 명으로 잡았던 지원대상자가 13만 명이나 더 늘어나게 됐으며 3천700억 원으로 예상했던 중앙정부의 예산도 2천8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국 지자체의 부담분도 급증해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제3항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적 이념 및 가치를 확인하고 실현하며 학부모 교육비 재정부담 경감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충청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였고 5개 도는 전면 무상급식을, 11개 시·도는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어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의 확대를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정부 필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지방재정을 압박하지 않도록 추가 소요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토록 하고,

둘째, 0~2세 보육대상 확대는 물론 각종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제2, 제3의 복지수요 발생 시 지방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바, 해당 사업의 시행초기에 소요재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셋째,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31조제3항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무상의 범위에 급식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관련 법률(초·중등교육법 제12조, 학교급식법 제8조)을 개정하여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 경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2년 6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